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07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임호선 · 김한규 · 장종태
윤준병 · 서왕진 · 임미애
송재봉 · 이춘석 · 김남희
안도걸 · 김주영 · 김승원
이정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조합내부통제기준 등) ① 지구별수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구별수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조합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조합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제5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의 직원 중에서 조합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조합내부통제기준과 조합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 전단 중 “제53조의3”을 “제53조의3, 제53조의4”로 한다.

제113조 전단 중 “제53조의3”을 “제53조의3, 제53조의4”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3조의4(조합내부통제기준 등)</u> ① <u>지구별수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구별수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조합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u> ② <u>지구별수협은 조합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u> ③ <u>조합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제5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의 직원 중에서 조합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u> ④ <u>조합내부통제기준과 조합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u>

요한 사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

제108조(준용규정) -----

-----제53조의3, 제53
조의4-----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3조(준용규정) -----

-----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
 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
 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
 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
 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
 조합등기부”로 본다.